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1778
----------	------

제출년월일 : 2008. 11. .
제출자 : 안산시장

□ 개정이유

-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쟁송사안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자문과 고문변호사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고소 고발 또는 공소제기 등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소송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외에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법 해석 및 자문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고문변호사에 대한 실비보상차원에서 정액수당 외에 자문실적에 따라 전별 10만원씩 월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근거와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및 제6조).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자문수당 2,000천원 증가

구 분	산출기초
기 존	200,000 x 5명 = 1,000,000
개정 후	600,000 x 5명 = 3,000,000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8. 11. 6. ~ 11. 16.(10일간).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삭제 한다.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정부 법무공단 및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 가. 불변기일 경과
 -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
 -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 1건 당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의 위임 또는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와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6조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 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또는 공소 제기되었으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문 및 소송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자문 또는 수임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소관 실과		기획예산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기획예산과장 박석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법무담당 조차종
	담당자 성명·전화	이병인 (행정 2812)

[별표 1]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내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민 사 소 송	1. 신청사건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	<u>신청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50</u>	· 청구서
	2. 본안사건	<p>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p> <p>※ 단, 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p>	<p>· 완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p> <p>· 60퍼센트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p> <p>· 화해의 성립, 인락,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단, 조건부 취하는 제외)</p>	<p>· 청구서</p> <p>· 소가증명원</p> <p>· 판결확정증명원</p> <p>·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p>
	3.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상동	상동
행 정 소 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동일	좌동	· 청구서
	2. 본안사건	<u>민사소송과 동일</u>	<u>민사소송에 준함</u>	<p>· 청구서</p> <p>· 소가증명원</p> <p>· 판결확정증명원</p> <p>· 소취하서 중 해당서류</p>
	3. 환송심	<u>민사소송과 동일</u>	<u>민사소송에 준함</u>	상동
<p>*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
	기타	소송비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대 : 실액 · 송달료 : 실액 · 검증비 : 실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보증 증명서 · 검증비, 감정료 등 납부명령 사본 각 1부 	
소송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정료 : 실액 · 출장비 및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 기타비용 : 실액(단, 검증비, 감정비 소송대리인 수행 시 3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p> <p>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법률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문변호사(작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정부 법무공단 및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5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제6조에 따른 중요소송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에 의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p> <p>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시정상 필요한 경우 4. 다음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 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에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p>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p>〈신설〉</p>	<p>제3조(고문사항)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각종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p>②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자문 및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등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한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p>

<p>제4조(소송비용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1"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p> <p>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4조(소송비용 등) 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의 지급 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 단위별로 지급한다.</p> <p>②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 1건 당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신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소송사건의 위임 또는 법률자문을 하는 경우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 등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p>
<p>〈신설〉</p>	<p>④ 제6조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1천만원 이내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고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개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지원비용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5조(임기 종료 후 진행사건의 수임)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 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6조(중요소송 등의 심의·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송 등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신청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환경기초시설, 장사시설 등 공익에 기여하는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피소(고소 등)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으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문 및 소송
<p>〈신설〉</p>	<p>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별표 1]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승소사례금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소송별	내용	착수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본인사건 100분의 50범위내	본인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	· 청구서 · 청구서
	2. 본인사건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신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단,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원전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우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급한 금액 · 화해의 성립, 인락, 소송 (쟁방취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단, 조 건간부 취하는 제외)	 · 원전승소는 착수금의 60퍼센트이상 승소할 경우 · 소가증명원 · 사전회견증명원 · 소송비용을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 단, 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원 · 화해의 성립, 인락, 소송 (쟁방취하 포함) 경우 착수금의 100분의 50(단, 조 건부 취하는 제외)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3. 환송심	· 본인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상동	상동
	3. 환송심 · 본인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	상동	상동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할 “	좌동 · 청구서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동일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사전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2. 본인사건 “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2. 본인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할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3.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할 민사소송과 동일	3. 환송심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할 민사소송과 동일 상동

[별표 1]

소송비용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승소사례금	소송비용청구시 구비서류
소송별	내용	착수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할 “	좌동 · 청구서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동일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2. 본인사건 “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2. 본인사건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할 민사소송과 동일 · 청구서 · 소가증명원 · 판결회견증명원 · 소추해서 중 해당서류
	3. 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할 민사소송과 동일	3. 환송심 민사소송과 동일 민사소송에 준할 민사소송과 동일 상동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78
----------	------

제안년월일 : 2008. 12. 1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월정 수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4조 제2항)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조 ~ 제3조 (생략)	제1조 ~ 제3조 (원안과 같음)
제4조(소송비용 등) ①(생략)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정액수당과 자문 1건 당 10만원씩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추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소송비용 등) ①(원안과 같음)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③~④ (원안과 같음)